



출산급여 신청, 어떻게 하나요?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신청하거나,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!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› 신청시기

출산일 이후 ~ 출산 후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

› 제출서류

- ① 출산급여 신청서
- ② 소득활동 증빙서류
- ③ 유산·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
고용보험 가입자 출산전후휴가급여

› 신청시기

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
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
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 신청

› 제출서류

- ①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 급여 신청서
- ②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 확인서
-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④ 휴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
- ⑤ 유산·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
고용보험에 가입한
근로자 엄마라면?

⋮

「인상된
출산전후
휴가급여
확인하세요!」



1인 사업자 엄마도
프리랜서 엄마도

⋮

「이제부터
출산급여
챙기세요」



고용노동부



고용보험 미적용자

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,
열심히 일 해온 엄마라면
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!



지원대상

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

-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**1인 사업자** (부동산임대업 제외)
-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**특수형태근로자, 프리랜서**
-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**근로자**

- ✓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중 '피보험단위기간 180일'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
- ✓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
- ✓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

지원내용

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지급 (총 150만원)

- ✓ 유산·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



자세한 내용은 **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**로 문의하세요!

고용보험가입자

고용보험에 가입된 엄마라면,
월 최대 160만원에서
**180만원으로 인상된
출산전후휴가급여를
확인하세요!**

출산전후휴가

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
근속기간, 근로형태, 직종 등과 상관없이
출산 전후로 90일 (다태아는 120일)의
휴가를 보장받습니다.

유산·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 등은
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,
90일 중 45일 (다태아는 120일 중 60일)은
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.

출산전후휴가급여

근로자는 휴가 첫 2개월 동안
통상임금의 100%를 보장받으며,
마지막 1개월 동안은
월 180만원 한도로 급여가 지급됩니다.